



현장이슈+ 경영지원 페이퍼는 노인일자리 업무지원시스템의 경영관리 상담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키워드를 발굴·분석하여, 현장의 궁금증 해결과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호 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노무) 도급계약의 개념과 유의사항
2. (세무회계) 근로장려금 어떻게 달라지나
3. (법률) 보조금 이것만 꼭 지키자(I) -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개발원 경영관리지원서비스, 이렇게 활용하세요.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다가

1. 지침 해석, 사업 운영문의, 전산시스템 문의가 필요하면?

업무시스템> 사업별 게시판> [Q&A]을 이용해주세요.



2. 경영관리지원 분야(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관련 단순한 문의사항이 생겼다면?

업무시스템> 사업별 게시판> [경영관리상담] 질문글 작성하기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님이 직접 답글을 작성해드립니다.

3. 경영관리지원 분야(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관련 심층 상담이 필요하면?

성장지원홈페이지(www.kordi.or.kr/growup) 접속> [경영관리자문] 선택> 상담신청하기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님이 직접 심층상담, 자문해드립니다

[경영관리지원 분야별 키워드 TIP]

- 인사노무 : 노동관계법령, 채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휴일, 휴직, 휴업, 계약종료, 징계, 퇴직, 퇴직적립금, 4대사회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
- 세무회계 : 법인세, 소득세신고,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세무, 재무제표, 기장, e나라도움, 예산 집행절차, 보조금, 나라장터, 중요재산
- 법률 : 회사 운영, 설립 법률관계, 보조금 사용 법률관계, 법인설립등기, 정관작성, 법적 분쟁, 소송

현장이슈+ 경영지원 페이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성장지원부(☎031-8076-34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알림

●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들여다보기

사회서비스형 인사노무 관리	시장형 세무교육-기초(가칭)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온라인 홍보교육(가칭)
 <p>분야 : 경영/직무)인사총무 교육 제공 기간 : 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 TIP : 사회서비스형 담당자가 아니라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 기본지식을 학습할 수 있어요.</p>	<p>Coming soon</p> <p>(12월 3주차 게시 예정) 분야 : 재무회계)세무 교육 TIP : 시장형사업단 담당자라면 알아야 할 세무 지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요.</p>	<p>Coming soon</p> <p>(12월 말 게시 예정) 교육 TIP : 누구나 손쉽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p>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사이버연수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연수원 이용 방법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접속>교육지원>공지사항>게시번호52 “2020 온라인 교육 ‘필수과정(담당자, 신규실무자)’ 정식 운영 안내 및 이용매뉴얼 업로드” 이용매뉴얼 파일을 참고하세요.

● 우리는 성장을 원한다! “배달앱 시장 첫 진출”신규 시범사업 들여다보기

“코로나 19시대, 어르신들 배달은 저희가 도와주세요!”

지난 9월, 성장지원센터와 주)바로그는 ‘노인생산물 비대면 온오프라인 플랫폼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존 동네 상권에만 의존해왔던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스타상품 발굴, 배달앱 시장(배민, 요기요 등) 성공적 진출을 위해 상품 컨설팅부터 전문교육, 브랜드 개발, 포장패키지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사업으로 은평시니어클럽 ‘파배기나라’, 인천의 카페지브라운 “샌드위치, 마카롱”, 서울 주)성동미래일자리의 ‘김밥, 분식세트’가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배달시장 진출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현장이슈+ 경영지원 페이퍼를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3개 매장의 솔루션 비법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도전하는 ‘배달앱 시범사업’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성장지원센터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평시니어클럽 “파배기나라”, 개발원 - 바로그 간 협업을 통해 ‘20년 12월부터 소비자들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1장 인사노무 3회차

[노무법인 의연] 2020. 12월

시장형사업단의 도급계약에 필요한 요건 및 운영 요령에 대한 이해와 현장 사례 검토

0 개념정리

[도급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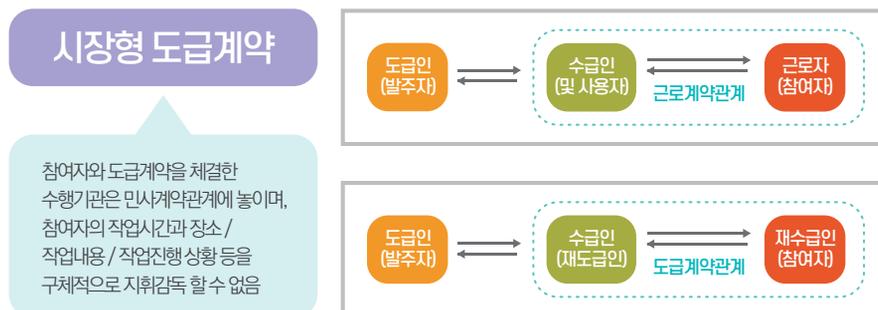
[근로계약]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무제공과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

〈주요개념 비교〉

구분	근로자	수급인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측의 당사자
보호법익	퇴직금, 4대보험, 각종 수당 등	민법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휘/명령	○	×

1 요약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일부 시장형 사업을 도급계약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해당 참여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진성 도급계약¹⁾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운영요령 이해 도모



2 현황

- '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이하 '지침'이라 함) 상 시장형 사업으로서 반제품 제조 및 납품,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²⁾이 아닌) 도급계약³⁾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지침 내 도급계약의 법적성격과 운영요령 등에 관해 안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로계약과의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회보험신고 또는 소득신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처리되어 일정시간이 흐른 뒤 수행기관이 의도했던 바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혼선이 있음

3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비교

- 근로계약의 이해
 - 수행기관이 참여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관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며, 참여노인은 '근로자'가 됨
 - 근로계약의 당사자들은 스스로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⁴⁾
 - '사용자'인 수행기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관계법령에 가입시키고 일정 보험료를 부담해야 함
 -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권한 내에서 행사되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⁵⁾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국세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함⁶⁾
- 도급계약의 이해
 - 수행기관이 참여노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계약의 '도급인'이 되며, 참여노인은 '수급인'이 됨
 -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스스로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도급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⁷⁾
 - 도급인과 수급인은 민사계약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관계법령의 적용도 받지 않음
 - 도급계약은 발주자(도급인)의 주문에 따라 수주자(수급인)가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하에 스스로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며, 발주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⁸⁾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⁹⁾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국세당국에 신고·납부하여야 함¹⁰⁾

1) 통상적으로 발주자(도급인)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 등의 이름으로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의 법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발주자(도급인)가 아닌 수행기관(수급인)이 사업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개별 참여노인과의 계약형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3) 근기 68207-806, 1994. 5. 16. 참고

3)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지침 79p.에서는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지침 80p.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4 사례검토

- 수행기관이 참여노인과 도급계약을 체결 후 지침의 정함에 따라 상해보험¹¹⁾¹²⁾ 가입을 완료하였으나, 참여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 신고 후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도급계약 체결 참여노인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지적(자격취득신고 요구, 보험료 직권부과 등) 발생
 -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참여노인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서는 안 되며, 지침의 정함에 따라 도급계약 수급인으로서의 보수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함
 -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로 수령된 것으로 판단하게 됨
 - 수행기관으로부터 신고된 (일용)근로소득 내역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공유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신고된 관련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취득 또는 보험료 직권부과 등이 발생하게 됨¹³⁾
 - 수행기관으로부터 소득신고 내역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요구 등을 정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내용의 도급계약 체결-사업소득 신고-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함
 -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할 내역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득세법의 정함에 따라 원천세 수정신고 부과제정기간 내 수정신고¹⁴⁾ 하고 사회보험 관련사항을 후속(소급) 처리

5 노무관리 유의사항

- 도급계약으로서의 법적성격을 부인당하지 않기 위해 수행기관(도급인)은 참여노인(수급인)에게 지나치게 세부적인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을 행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

- 7) 지침 81p.에서는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 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8) 즉, 반대로 해당 계약의 본질상 발주자로부터 구체적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수주자가 스스로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계약은 외형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더라도 도급계약이 아닌 것(예를 들어 근로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것임
- 9)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10) 지침 81p.에서는 “도급계약 체결시...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1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련 요양·휴업 등을 보장하는 공적보험인 산재보험과 달리 보험자가 피보험자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하는 상법에 따른 인보험을 말함12) 지침 80p.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12) 지침 81p.에서는 (민사계약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시장형 사업에서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인인 수행기관이 수급인인 참여자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13) 2020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1p. “부과고지 사업장 보험료 부과 및 정산 업무 흐름도” 참고
- 14) 관련 사항은 소득세법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제2장 세무회계 3회차

[회계법인 조은] 2020. 12월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발표에 포함된 근로장려세제 관련 개정된 법률 내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정리함

근로장려금, 어떻게 달라지나?

01. 과세관청의 직권신청 가능
02.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0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단축
04. 돈별이가구 범위 확대



1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개념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증가하도록 설계

2 도입배경 및 연혁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근로를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2006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2009년 부터 지급하였고, 2015년 부터는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19년에는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설계하면서 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해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에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적용대상

- 2009년 최초 지급 때는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2012년에는 자영업자 중 보험설 계사·방문판매원이 추가되었고, 2015년에는 모든 자영업자(전문직*은 제외)로 확대되었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 2019년에는 종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5 적용단위 : 가구

-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총급여액 등"이라 함)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산정합니다.

6 신청자격

● 가구원 개념

1) 부양자녀의 범위

-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자를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2) 부양자녀의 연령 및 소득기준

-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자),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기준 적용에서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3) 부양자녀의 생계기준

-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취학 또는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4) 부양자녀의 판정시기

-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

5) 여러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판단 순서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⑤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6) 직계존속 기준

-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총소득요건

1)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2)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아래 참고)
 -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 합산

구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재산요건

1) 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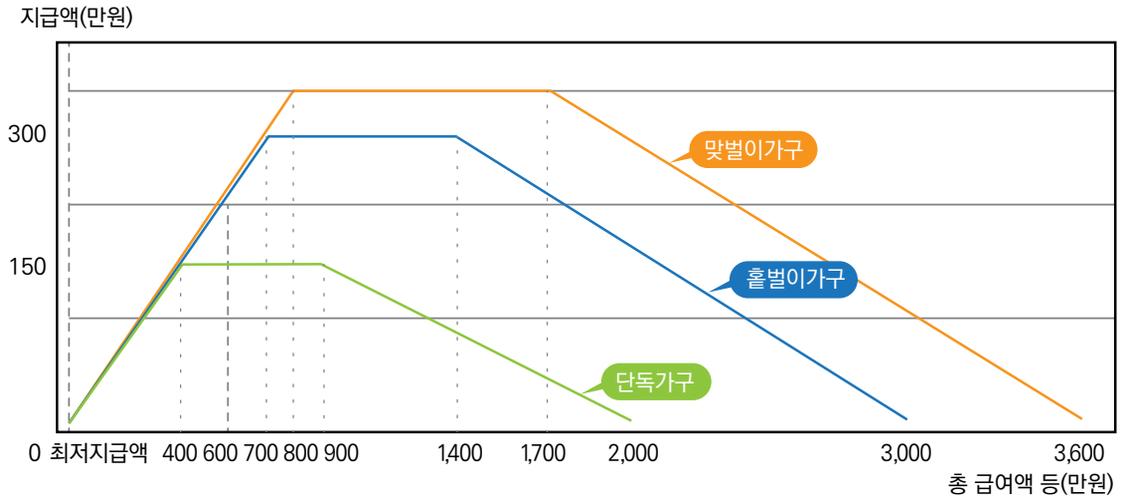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2) 재산은 공공기관 보유 자료에 의해 재산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재산으로 한정합니다

- 토지·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 현금 및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 보험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 회사채 등
-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7 장려금 신청



8 신청시 제출서류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⑨ 사업실적명세서

● **재산 증거서류**

-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 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6.2. ~ 12.1.까지)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 2)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주된 소득자가 ARS(1544-9944)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4월말 ~ 5월초 우편발송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10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9쪽 참조)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9쪽 참조)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지급 및 정산

1)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하반기분 지급에 한함)에는 9월 정산 시에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0.9.1.~'20.9.15.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21.3.1.~'21.3.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10 세법 개정사항

-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
 - * 상반기 소득분 : 12. 15일, 하반기 소득분 : 6. 15일

11 FAQ

1	Q. 노인일자리사업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사업 유형은?
	A.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Q. (사업소득발생)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 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산정하나요?
	A.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4	Q.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법률 3회차

[법무법인 연두] 2020. 12월

보조금 이것 만 꼭 지키자(1)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1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즉 보조금은 국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개인은 이 돈을 다시 국가에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 보다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보조금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
-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 ▶ 지방 재정법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각종 운영안내서

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업무담당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각종 운영안내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령 중 공공재정환수법은 올해 제정된 법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3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돈

보조사업자, 수행기관과 같은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는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거짓 신청이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만약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환과 함께 가산금 처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보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제30조 제1항)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제31조 제1항),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2003도4570 등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대법원 2009도13751 등 판결 참조)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보조금 사용할 때 3가지만 명심하자

첫째,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금지

보조금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범법행위입니다.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하거나 참여하지도 않는 노인을 참여노인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금지

제대로 보조금을 수령 받은 후 그 돈을 쓰기로 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직원에 대한 급여보전용이면 그 용도로, 자산 구입이면 오로지 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특정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 순간 바로 보조금법 위반이 되므로 수령한 보조금을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처분 금지

보조금을 수령하여 용도에 맞게 자산을 취득하였다도 이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보조금법 위반이 됩니다. 취득한 자산을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②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③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수행기관에서 시장형사업단으로 식품제조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보조금 3천만원을 수령하여 식품제조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배달할 용도로 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행기관 담당자는 해당 자동차를 물품 배달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수행기관 업무 전반을 처리하기 위해 출퇴근용, 수행기관 업무수행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행기관 담당자의 이러한 차량사용이 바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수행기관 업무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통해 불필요한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여기서 잠깐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중요재산이란 무엇인가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 관계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입니다. 이에 대해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중요재산'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중요재산에 대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제4호의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원의 보조사업은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복지부장관이 중요재산으로 인정한 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 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구입 가격 5백만 원 이상의 물품

따라서 수행기관 등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중 5백만원 이상인 자산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이 되고 이 재산을 본래 용도의 사용, 양도, 담보 등을 할 경우 관계기관의 사전승인을 꼭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에 따른 조치와 관련 사례들에 대해서는 4회차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